1. 개정이유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도입,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제한,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8호, 2022.12.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며,각종 서식을 전자화가 용이하도록 수정하여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운영 주체,계획 수립 등)을 규정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4.)될 예정으로, 전시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종 및 시설을 규정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설 설치 근거가 도입('22.12.13., 야생생물법 개정)되었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5조의2,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① 법 제6조의3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법 제2조제1호의 야생생물, 같은 조 제2호의 멸종위기야생생물, 같은 조 제3호의 국제적멸종위기종, 같은 조제4호의 지정관리 야생생물, 법 제21조제1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별표8)
 -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의 유입주의생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생물, 같은 조 제8호의2에따른 생태계위해우려생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지정·고시된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
 - ②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의4(전시가 가능한 종)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은 고정된 위치

- 에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전시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조류 중 앵무목(Psittaciformes), 꿩과(Phasianidae), 되새과(Fringill idae), 밀납부리과(Estrildidae) 전 종
- 2. 파충류 중 거북목(Testudines) 전 종
- 3. 파충류 중 코브라과(Elaphidae), 살모사과(Viperidae)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Squamata) 전 종(도마뱀아목, 도마뱀붙이아목, 이 구아나아목 포함)
- 4. 전갈목(Scorphiones)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Arthro poda) 전 종
-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 가.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종만 해당한다) 나. 법 제8조의4에 따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 다.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시설
 - 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 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과학관

- 바.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 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 제7조의6(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법 제 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 이라 한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야생동물을 진료 및 치료할 수 있는 진료실
 - 2. 야생동물에 적합한 사육시설
 - 3. 야외 방사장(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4.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 조절 설비 등 적절한 보호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
 - ② 보호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의사 1명 이상
 - 2. 사육사 1명 이상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야생동물의 운송) ① 법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1에 따른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병든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 야생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3. 운송 과정에서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 또는 제8호의2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 또는 제9호의 2 서식"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 또는 제9호의2 서식"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떼까마귀"를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까치"를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큰부리까마귀, 떼까마귀"로 하며,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장업, 낚시터업, 내수면 어로어업 등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 후단 중 "행정처분을 통보받"을 "최근에 처분을 받"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부터 별지 제16호서식 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부터 별지 제20호서식 까지, 별지 제20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 까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부터 별지 제26호서식 까지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26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탁관리게약체결"을 "위탁관리계약 체결"로 하며, "(환경부 자연자원과)"를 "(시·군·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의2(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
	<u>템 운영) ① 법 제6조의3의 "야</u>
	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u>1. 법 제2조제1호의 야생생물,</u>
	같은 조 제2호의 멸종위기야
	생생물, 같은 조 제3호의 국제
	적멸종위기종, 같은 조제4호
	의 지정관리 야생생물, 법 제2
	1조제1항의 환경부령으로 정
	<u>하는 종(별표8)</u>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2의 유입주의생물, 같은 조 제
	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생물,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생
	대계위해우려생물, 같은 법 제
	11조제1항에 지정・고시된 국
	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
	②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법 제6
	조의3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
	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4(전시가 가능한 종)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종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종은 고정된 위치에서 사
람과 접촉하지 않게 전시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조류 중 앵무목(Psittaciform es), 꿩과(Phasianidae), 되새 과(Fringillidae), 밀납부리과 (Estrildidae) 전 종
- 2. 파충류 중 거북목(Testudines) 전 종
- 3. 파충류 중 코브라과(Elaphidae), 살모사과(Viperidae)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Squamata) 전 종(도마뱀아목, 도마뱀붙이아목, 이구아나아목포함)
- 4. 전갈목(Scorphiones) 등 독이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Arthropoda) 전 종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환경부

<신 설>

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 1.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 우
 - <u>가.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u> <u>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종</u> <u>만 해당한다)</u>
 - 나. 법 제8조의4에 따른 유기

 · 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 다.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

 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
 - 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 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바.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신 설>

- 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국립수목 원
- 제7조의6(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야생동물을 진료 및 치료할 수 있는 진료실
 - 2. 야생동물에 적합한 사육시설3. 야외 방사장(필요한 경우로
 - 4.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 조

 절 설비 등 적절한 보호환경
 - 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
 - ② 보호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u>1. 수의사 1명 이상</u>

한정한다)

- 2. 사육사 1명 이상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 설치 및 운 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신 설>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야생동물의 운송) ① 법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1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든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 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 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 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의 설 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야생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 정에서 야생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 뜨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운송 과정에서 전기(電氣) 몰 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등 허가신청) ① 법 제14 ·채취등 허가신청) ① -----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포획·채취·방사·이 식・가공・유통・보관・수출・ 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 ·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 훼손 및 고사(枯死) (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 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8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 생물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 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 6. (생략)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을 발급하여야한다.

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저

<u>별</u>
지 제8호 또는 제8호의2 서식
.
1. ~ 6.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9
호 또는 제9호의 2 서식
<u>.</u>
∥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등 신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 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u>별지 제9호서식</u>의 멸종 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 가증에 포획한 개체수・장소・ 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채취등 신고)
별지 제9호 또는 제9호의
2 서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제10조 관련)

-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 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기관으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
-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립생태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으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포획, 채취, 방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식, 가공, 유통, 허가신청서 보관, 훼손, 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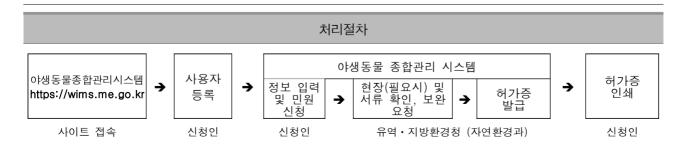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

※ []에는 해당되	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상호(성명)		연락처		
신청인	주소				
	조사 또는 사업명(해당시)			
	대상종 학명	멸종위기 등급	수량	목적 • :	용도
며 조 이 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					
포획ㆍ채취시	면적		m²		
추가사항	포획 • 채취방법				
방사ㆍ이식시	장소		시기		
추가사항	방사 • 이식방법				
	가공 명세				
가공 시 추가사항	입수 경위				
T/1/16	H 61				
유통 시	매수인 성명		입수경위		
추가사항	매수인 주소				
-11.4.	장소				
훼손 • 고사시 추가사항	훼손 • 고사방법				
				-1 -11 -0111 -11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수입 등의 허가를 신청		법 시행규	직 세13소세1항에	따라 멸종위기
				년	월 일
으 여 취	거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ㅠ 끅 완 (지방환	경 청 장 ·경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 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1. 목적・용도란에는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재활용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수출, 면종위기 야생생물 수입, 반입

[]수출 []반출 []수입 []반입

허가신청서

※ []에는	해딩	'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l리기간	10일	
신청인	1	상호(성명)								
건성건	2	연락처								
	3	상호(성명)	④ 수입	국			(5 수입목적(용도)	
수입자										
(실수요자)	6	주소(시설 소재지)					(1	연락처:)
	(7)	상호(성명)	8 수출	국			`			,
A = -1		C (2 2)								
수출자	(9)	주소(시설 소재지)								
		. (,					(연락처:)
	40)	출발국 및 선적항	/		44)	ᄎ바세 저	ol	20		
A A =11 =1		·								
수송계획	_	② 도착국 및 도착항 / / / / / / / / / / / / / / / / / / /						20		
	(14)	수송방법			(15)	항공편 달	및 선박	박편명 		
기타	16	인공증식 증명서 번호(해당하는 경우)		17)	발행국 닭	빚 기관	반명 ,		
관련	_							/		
정보	(18)	원산지 증명서 번호(해당하는 경우	음)		(19)	발행국 5	빛 기관	반명 /		
								/		
			21)	22		23 1)량	24)	25	26)
		@학명	(21) 멸종위기 등급	형E	H	허가서 수량	실제 수량	식별번호 유무	HS코드	②6 단가
4 = -1						тғ	ㅜ당_	"' '		
수·출입										
표본정보										
「아쌘색	모녀	분호 및 과리에 과하 번류, 제1 <i>4</i>	조제1한 [및 간은	2 버	시핸규칙	제13	조제1한에 따금	나 멱종위기	0년생생묵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 18 -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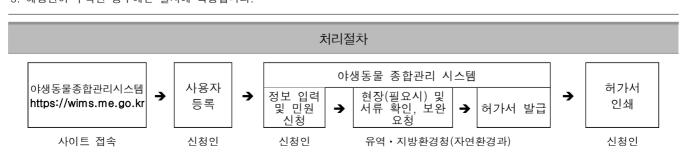
귀하

	@학명	21) 멸종위기 등급	(22) 형태	② 허가서 수량	수량 실제 수량	②4 식별번호 유무	②5 HS코드	
		등급		수량	수량	市干		
수·출입								
표본정보								

신청인 제출서류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야생생물 보호 및	
	0. 골딩위기 아경경을도 한편 한경, 기속 또는 승극을 피해를 증경을 꾸 쓰는 자유(아경경을 또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 1. ⑤란에는 수입 목적(용도)을 적고, ⑥란에는 실수요자 주소 및 수입 대상 표본의 사육시설 주소를 적습니다.
- 2. ⑩란부터 ⑯란까지는 수송계획에 필요한 해당 표본의 운송 방법(항공/선박)과 항공편 및 선박편명을 적습니다.
- 3. ⑯란부터 ⑲란은 그외 인공증식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한 정보를 적습니다.
- 4. ⑩란부터 ⑯란은 수·출입 허가서에 기재된 정보를 적으며 ㉑ 수량에는 허가서상 수량과 실제 수입 수량을 각각 적으며, ᅠ��란에는 개체에 부여된 식별 번호 유무(O, X)를 표기하고 개체식별번호를 별지로 제출합니다.
- 5.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번호 제 호

포획, 채취, 방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식, 가공, 유통, 허가증

		보관, 후	훼손,	고사				
	[]포획 [<u>]</u> []가공 []유통							
	상호(성명)		연락처					
신청인	주소							
	조사(사업)명							
	대상종 학명	멸종위기 등급	수량	목적 • 용도	지역			
	1							
	2							
	3							
허가사항	4							
	5							
	6							
	7							
	8							
허가기간								
허가조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유 역 환 경 청 장 (지방환경청장)

직인

유의사항

-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 2. 포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15일 이내에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3.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

	멸종	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	취 등 신고명세	(뉘쪽)
일시	대상종 학명	멸종위기 등급	개체수	(포획·채취) 장소	(포획·채취) 방법

※ []에는 해	당되는 곳에 √표	를 합니다.						
-1-1	-u -						유효	기간
허가번호 :	제 호						발급일부	터 365일
			₹	수출,				
	며 조 이	71 014141				- -1 -	가증	
	ESTI	기 야생생				07 /	75	
			₹	수입, [반입			
		[]수출[]	반출 []수입 []	반입			
△	N TI	상호(성명)	ŕ	-입국		수입-	목적(용도)	
	일자 ∶요자)	주소(시설 소재지)						
(27	표시)	1 - (1 - 2 - 1111)			(연락기	† :)
		상호(성명)	ŕ	-출국				
수	출자	주소(시설 소재지)						
		1 - (1 - 2 - 1111)			(연락기	† :		,
			멸종위기	1		량		
		학명	등급	' 형태	허가서 수량	실제 수량	HS코드	단가
	1				10	10		
	2							
수·출입	3							
표본정보	4							
	5							
	6							
	7							
	8							
허가조건								
「야생실	생물 보호 및 R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항	!규칙 저	13조제2형	상에 따라
		- ' ' 더트' 수출·수입 등을 허			_ , _		,,,,,,,,,,,,,,,,,,,,,,,,,,,,,,,,,,,,,,,	
						년	월	일
						•		
		유 역 환 경	영 청 경	당 직	o			
		(지 방환경	형청장	·) ¬	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술, 반출, 수입, 반입

[]수출 []반출 []수입 []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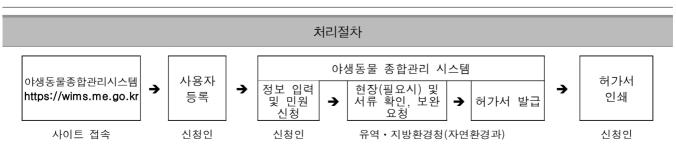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 상호(성명) ② 연락처									
수입자	③ 상호(성명)	④ 수입국				(5)	수입목적(용도)		
(실수요자)	⑥ 주소(시설 소재지)					(연택	락처:)
ᄼᅔᅱ	⑦ 상호(성명)	⑧ 수출국				·				
수출자	⑨ 주소(시설 소재지)					(연택	락처:)
	⑩ 출발국 및 선적항	/		11)	출발예정	성일	20			
수송계획	⑫ 도착국 및 도착항	/		13)	도착예정	성일	20			
	① 수송방법			(15)	항공편	및 선박	편명			
기타	⑥ 인공증식 증명서 번호		(17)	발행국	및 기관	명 /			
관련 정보	⑧ 원산지 증명서 번호(해당하는 경우)	(19	발행국	및 기관	명 /			
	@학명	② 멸종위기 등급	② 형태		23 허가서 수량	수량 실제 수량	② 식별번호 유무	® HS코드		
수·출입										
표본정보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3 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					데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저	14조	제1항에
								년	월	일
					신청인			(人	너명 또	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니하·								
신청인									<u></u>	 ·수료
제출서류	뒤쪽 참조								Ţ	ㅜ표 없음

	@학명	②) 멸종위기 등급	(22) 형태	② : 허가서 수량	수량 실제 수량	②4 식별번호 유무	②5 HS코드	26 단가
수·출입								
표본정보								

신청인 제출서류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1부 나.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수출・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용계획서 라.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1. ⑤란에는 수입 목적(용도)을 적고, ⑥란에는 실수요자 주소 및 수입 대상 표본의 사육시설 주소를 적습니다.
- 2. ⑩란부터 ⑯란까지는 수송계획에 필요한 해당 표본의 운송 방법(항공/선박)과 항공편 및 선박편명을 적습니다.
- 3. ⑯란부터 ⑲란은 그외 인공증식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한 정보를 적습니다.
- 4. ⑳란부터 ㉓란은 수·출입 허가서에 기재된 정보를 적으며 ㉓ 수량에는 허가서상 수량과 실제 수입 수량을 각각 적으며, ㉑란에는 개체에 부여된 식별 번호 유무(O, X)를 표기하고 개체식별번호를 별지로 제출합니다.
- 5.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에는 해	당되는 곳에 √표	를 합니다.								
-1-1-1-								유효	기간	
허가번호	제 호							발급일부	터 365일	
인공	증식한	멸종위기 이 []수출[T⊧	∃ , ⊑	반출, 반입	허가	서	
	N T l	상호(성명)		수입도	1		수입득	락적(용도)		
	일자 :요자)	주소(시설 소재지) (연락처:)								
	상호(성명)		수출로	1				·		
수를	출자	주소(시설 소재지)				(연락:	처:)	
			멸종위	71		수	량			
		학명	등급		형태	허가서 수량	실제 수량	HS코드	단가	
	1					T3	T3			
수·출입	2									
	3									
ㅜ'풀겁 표본정보	4									
	5									
	6									
	7									
	8									
 허가조건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공증식한								
		유 역 환 : (지 방환 :			직	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7일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학명		멸종위기 등급	수량 (단위)		목적 및 용도
	주소	주소	상호(성명) 주소 _{하며} 멸종위기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멸종위기 수량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멸종위기 수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역 환 경 청 장 (지 방환경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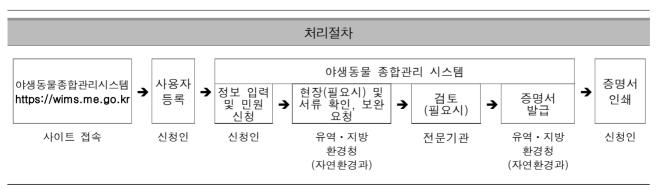
신청인 제출 서류

- 1. 인공증식된 야생생물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 2.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주소란에는 증식 • 재배장소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재활용품)

증명번호 제 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신	상호(성명)	연 락 처	
청 인	사육시설		

멸종위기 야생생물 내역

멸종위기	수량	부모개체	목적	보관시설
등급	(단위)	입수경위	및 용도	명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 역 환 경 청 장 (지 방환경청장)

직인

유의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15일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m²)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수 • 인계 명세									
		1	인 =	수 자	인 7:	ᅨ자			
날짜	학명	수량	상호 (성명)	연락처	상호 (성명)	연락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성명) 신청인				Q.	변락처						
선정인	보관장소										
	학명		멸종위기 등급	=	수량	형태	용도				
야생생물											
보관내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역 환 경 청 장 (지 방환경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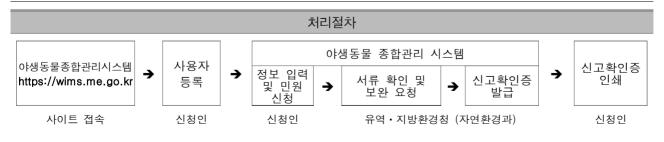
신청인 제출 서류

- 1.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1부
-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1. 형태란에는 멸종위기 아생생물의 성별•크기, 살아 있는지의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 용도란에는 '증식용, 의학용, 학술용, 관상용, 장식용'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재활용품)

작성방법

-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란은 적지 않습니다.
- 2. ④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 3. ⑨용도란에는 보관의 용도 또는 목적을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안에는 용도를 적습니다.
- 4. ⑩명세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성별・크기, 살아 있는지의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신고번호 제	호				
=	결종위기	야생성	생물 도	L관신고확인	인증
상호(성명)				연락처	
보관장소					
		야 생 생	물 보 관	내 역	
학 명		멸종위기 등급	수 량	형 태	용도
「야생생물 보호 멸종위기 야생생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디 제18조제2항에 따라
				Ļ	년 월 일
		² 역 환 경 지 방 환 경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

[]수출(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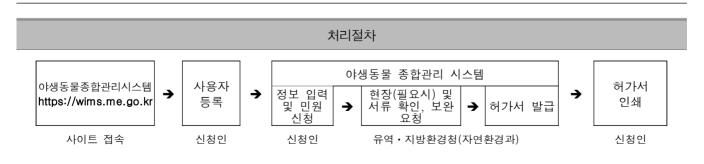
※ []에는	해딩	t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의기간	10'	일
	1	상호(성명)									
신청인	2	연락처									
수입자	3	상호(성명)	4 7	입국				(5)	수입목적(용도)	
(실수요자)	6	주소(시설 소재지)						(여리	박 처 :)
	7	상호(성명)	8 수	 출국				(6-	171.		
수출자	9	주소(시설 소재지)						(연락	박처:)
	(10)	출발국 및 선적항	/			(11)	출발예정	성일	20		
수송계획	(12)	도착국 및 도착항	/			(13)	도착예정	성일	20		
	14)	수송방법				(15)	항공편	및 선박	편명		
수·출입 허가서	16	허가번호				17)	유효기간	<u> </u> 20		. ~ 20	
관련 정보	18	목적코드				19	보안번호 부여된 경	<u>5</u> 우만)			
기타	② 인공증식 증명서 번호(해당하는 경우)					21)	발행국	및 기관	명 /		
관련 정보	22	원산지 증명서 번호(해당하는 경역	우)			③ 발행국 및 기관명 /					
		@학명	25 부속서	26 형태	2 <u>1</u> 출처:) 코드	②8 허가서 수량	수량 실제 수량	② 식별번호 유무	30 HS코드	③) 단가
수·출입											
표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 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6조제1	항 및 김	같은 법	네 시	행규칙 제	네19조제	1항에 따라	국제적 등	별종위기종의
										년	월 일
							신청인			(A-	l명 또는 인)
(유 (지	역환경청장 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제출서류 담당 공무(확인 사힝	—— 원	뒤쪽 참조									수수료 10만원

	@학명	②5 부속서	26 형태	27) 출처코드	28 : 허가서 수량	수량 실제 수량	② 식별번호 유무	30 HS코드	③1) 단가
수·출입									
표본정보									

신청인 제출서류	「아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출입 허가서 사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수·출입 사실 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0만원

작성방법

- 1. ⑤란에는 수입 목적(용도)을 적고, ⑥란에는 실수요자 주소 및 수입 대상 표본의 사육시설 주소를 적습니다.
- 2. ⑩란부터 ⑯란까지는 수송계획에 필요한 해당 표본의 운송 방법(항공/선박)과 항공편 및 선박편명을 적습니다.
- 3. ⑯란부터 ⑲란까지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적습니다.
- 4. ⑩란부터 ৷ 앱란은 그외 인공증식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한 정보를 적습니다(해당 경우만).
- 5. ②라부터 ③0란은 수·출입 허가서에 기재된 정보를 적으며 ②8 수량에는 허가서상 수량과 실제 수입 수량을 각각 적으며, ②라에는 개체에 부여된 식별 번호 유무(O, X)를 표기하고 개체식별번호를 별지로 제출합니다.
- 6.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

구	허가		-일 모드	표본 정보				수입자			수출자			
' 분 	번호	허가일		학명	부속서	상태	출처 코드	수량	상호 (성명)	주소	수입국	상호 (성명)	주소	수출국

364mm×257mm(백상지 80g/m², 재활용품)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① 상호(성명)										
신청인	② 연락처										
소유자	③ 상호(성명)	⑤ 수입목적	수입목적(용도)								
(실수요자)	⑥ 주소(시설 소재지) (연락처:)										
		학명	부속서	표본형태	용도	최종수출국	입수시기 및 지역				
표본 정보											
0-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당인		(서명 또는 인)				
유 역 환 경 청 장 (지방환경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종이 아 만 해당합니디 2. 해당 종을 취득 •채취된 시기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합관리시스템 ns.me.go.kr →	및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병보 입력 및 민원 신청				→ 허가서 인쇄				
사이 <u>5</u>	 트 접속	 신청인 선	 닌청인	유역 • 지방	 환경청(자연	 년환경과)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재활용품)

증명번호 제 호 (Original certificate No.)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Pre-Convention Certificat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 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신청인	상호	(성명) (Name)									
(Applicant)	주	소 (Address)	(연락처 Phone No.:								
	번호 (No.)	학명 (Scientific Name)	부속서 (Appendices)	표본형태 (Specimen Type)	개체수 (Quantity)	용도 (Purpose)	최 <mark>종수출국</mark> (Last export Nat.)	입수시기 (Date of Acquisition)	협약적용시점 (CITES listed date)		
 표본목록											
(Specimens											
listed)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임을 증명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1) of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ment Act", Article 13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1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it is certified that specimens acquired before the application of the CITES.)											
							냗	년 월	일		
			유 역 환 (지 방환·			직업	<u> </u>				
The	Certific	cate is issued by									
		Place	Date Signature Of				fficial seal and title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① 상호(성명)			'						
신청인	② 연락처									
 사용자	③ 상호(성명)	④ 수입국		⑤ 용도						
(실수요자)	⑥ 주소		(연릭	낚처 :)					
 해당	① 학명		⑧ 부속서							
생물	@ JO HH			-1						
(악기재료)	⑨ 사용 부분		⑩ 재료 원신	기						
명세										
	⑪ 악기의 종류	<u></u> ⑫ 제작사	(13 제작연도						
-11 FL	④ 생산국가									
해당										
악기	⑤ 입수 시기 및 경위									
명세	⑥ 일련번호 또는 제작번호 등 악기 식별을 위한 세부 사항									
기타	사용계획(개인적 이용, 유·무료 등	공연, 전시, 방문국기	가 및 일정 등	포함)						
「야생실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	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으로 제작된 악기 '	인증서의 발급·	을 신청합니다						
				Ę	년 월 일					
			시취이		(1154 551 01)					
	으 여 하 겨 처 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역 환 경 청 장 (지방환경청장)									
	1. 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	 							
신청인 제출서류	2. 악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 3. 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 상 크기의 악기 시진 1장	학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Sálalal Alver							
	ıs.me.go.kr 등폭 및	로 입력 현장(필 민원 → 서류 획	등합관리 시스템 필요시) 및 막인, 보완 → 요청	허가서 발급	→ 허가서 인쇄					
사이트			고 지방환경청(자연취	 환경과)	 신청인					

증명번호 제 호 (Original certificate No.)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Ce	ertificate for Musica ONVENTION ON IN SPECIES (l Instrume ΓΕRNATIO	nt Derived NAL TRAI	from (DE IN E	CITES Spec ENDANGER	ies)		
상호(성명) (Name)			연락. (Phone					
주소 (Address)								
해당 생물 명세 (Species Concern	학명 (Scientific Name)				부속서 pendices)			
ed)	사용 부분 (Used part)				. 원산지 ry of Origin)			
	악기의 종류 (Type of Musical Ins trument)			(Count	산국가 ry of Produ ction)			
해당 악기 명세 (M usical Instrument Concerned)	입수시기 (Date of Acquisiti on)			(Metho	수 경위 od of Acqui iition)			
	명세 (Details)							
「야생생물 보호 및	!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u>및</u> 같	은 법 /	니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리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 <u>:</u>	로 제작된 익	기임을 인증	등하며, 본	인증서가 인	증하는 :	표본의 년	비상업적
이용 및 다수의 국경(이동을 허가하고 인증/	너 소지자의	국내 거주	지 외의	판매, 거래 .	또는 폐	기를 금	¦지한다.
h 5 of the Enforcem the Act, the musical and the specimen cov	rticle 16, Paragraph 1 of the Administrument that is subvered by this certificate y not be sold, traded	ct, and Art bject to this , which per	icle 21(2), s permit is mits multipl	Paragra proved t le cross-	ph 2 of the o be derived border move	Enforc I from (ments,	ement CITES s is for n	Rule of species, on-com
						년	월	일
		환 경 : 한 경 경			직인			
The Certificate	is issued by							
Place	Date	Sigr	nature	Off	icial seal a	nd title		

210mm×297mm[백상지(120g/m²)]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대장

	T pJl			신청인	국	제적 멸종	위기종 재	료 명세				악기 정보		
구분	구분 증명번 인증 호	<u>1</u> 인증일	상호 (성명)	주소	학명	원산지 (표본)	생산지 (제품)	협약 적용시 점	해당 부속서	악기의 종류	입수 시기	획득한 지역	입수 경위	명세

364mm×257mm[백상지(80g/m²)]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상호(성명)			
신청인	연락처			

용도변경 명세

학명	부속서	월데	수량 -	용	도	변경사유	ΝЭ
~ ~ ~ ~ ~ ~ ~ ~ ~ ~ ~ ~ ~ ~ ~ ~ ~ ~ ~	구축시 	형태		변경전	변경후	[건경사표 	비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 종의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역 환 경 청 장 (지방환경청장)

1. 용도변경사유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등 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신청인 제출 서류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1부 없음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같 은 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승인서 사용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정보 입력 및 민원 **→** 현장(필요시) 및 **→** 등록 검토 승인서 https://wims.me.go.kr 인쇄 서류 확인, 보완 (필요시) 발급 ___ 신청 요청 신청인 유역 • 지방 사이트 접속 신청인 유역 • 지방 국립환경과학원 신청인 농림수산검역 환경청 환경청 (자연환경과) 검사본부 (자연환경과)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재활용품)

	용도변경계획서											
관리번호												
용도변경대상개체	수입(반입)연도		수입(반입)처									
o 보 한 성 네 중 게 세	연령		성별									
용도변경목적	목적											
및 사용명세	사용명세											
부산물폐기방법												
처리장소 및 방법												
비고												

승인번호 제 호				
국제	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송	승인	서	
상호(성명)				
연락처				
	승 인 내 용			
학 명				
형 태				
수 량				
용도변경사항	()→() 변경사유			
승 인 조 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리기종의 용도변경을 승인합니다.	행규칙	제22조제	3항에
		년	월	일
	유 역 환 경 청 장 (지 방환경청장)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r 10 i	

※ []에는 해당되	I는 곳에 √표늘 압니니	ł.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	간	7일		
신청인	상호(성명)				연락;	처				
01501	상호(성명)				연락	처				
양도인	주소									
아스이	상호(성명) 연락처									
양수인 	주소									
	학명	수량	부속서	형	태	용도	이	도사유	개체식팀	별번호
생물정보										
-										
	보호 및 관리에 관	_	6조제6형	당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	23조제1형	항에 따리	위와
같이 []앙노 []양수를 신고합니	리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	는 인)
유역환경 (지방환경: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	세적 멸종위	식기종의	의 입수	: 경위 및 0	를 증	명하는 서		
	류 1부 2. 양도한 국제적	선 명종위기조이	보모개체	이 이 =	수 겨의	및 이름 4	<u> </u> 으면 하	·느 서류 1		
신고인	부(양도한 종	이 수입허가된 중	종에서 인	공증식	l된 경	우만 해당함	합니디	+)	수수	
제출 서류	3. 양수하려는 X 요한 생물을	l의 국제적 멸종 양도하는 경우민			설 도면	! 또는 사진	!(보호	시설이 필	없음	
	4 사육시설 등록	증 사보(사윤시	설 등록대	산이 .	국제전	멱종위기	종을 일	뱣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학명	수량	부속서	형태	용도	양도사유	개체식별번호
생물정보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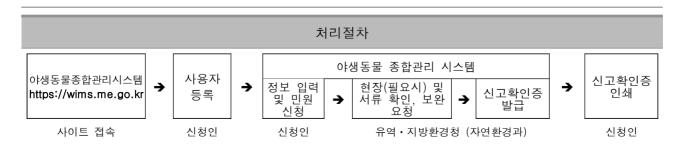
수입 •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인]

귀하



수입 ·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 · 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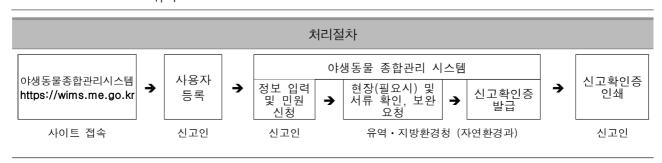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상호(성명)			연락처							
신고인	사육장소										
	학명	수량	부속서	폐사・	질병사유		처리계획				
생물정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 종의 폐사·질병 상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그	<u> </u>			(서명 또는	- 인)			
	유 역 환 경 청 장 (지방환경청장)	하									
	1. 수의사 진딘	서(질병으	로 사육할 수 없	게 된 경우만 해	당하며, 개인이	에완					
신고인	신고인 제출 서류 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없음 2.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1장										
제	호		よるのコを	레시 가	ᆈᆈᆕ	ol 조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 신고확인증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인]

귀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일		처리기간 7일	실				
	상호(성명)				연락처					
신청인	주소									
		생물종 정	 ! 보		부모개체 정보					
	학명	부속서	수량	목적 및 용도	학명	부속서	입수경위			
신청정보	1				부)					
					모)					
	2				부)					
					모)					
	3				부)					
					모)					
	4				부)					
					모)					
	5				부)					
					모)					
	6				부)					
					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	월 일			
				신청인		(서당	명 또는 인)			
유역	[환경청장 _{귀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부모개체관련정보

처리절차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증명서 → 정보 입력 및 민원 현장(필요시) 및 서류 확인, 보완 **→** 등록 https://wims.me.go.kr 검토 증명서 인쇄 (필요시) 발급 ` 신청 요청 사이트 접속 유역·지방 유역 • 지방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전문기관 환경청 환경청 (자연환경과) (자연환경과)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수수료

없음

증명번호 제 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신청인	상호(성명)	연락처	
282 282	주 소		

국제적 멸종위기종 내역

학명	부속서	수량	목적 및 용도	개체식별번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 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 역 환 경 청 장 (지 방환경청장)

직인

인공증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수 · 인계 명세 인수자 인계자 학명 수량 날짜 상호 상호 연락처 연락처 (성명) (성명)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성명)				연락처	
262	주소					
	학명	부속서	수량	시설 면적	입수 경위	인공증식의 목적·용도
허가정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귀하 (지방환경청장) 1. 인공증식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1부 2. 인공증식 시설의 명세서 1부 신청인 수수료 제출 서류 없음 3. 인공증식의 방법 1부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처리절차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사용자 허가증 현장(필요시) 및 서류 확인, 보완 요청 정보 입력 및 민원 **→ →** 허가증 https://wims.me.go.kr 등록 검토 인쇄 **→** 발급 (필요시) 신청 유역 • 지방 사이트 접속 신청인 신청인 전문기관 유역 • 지방 신청인 환경청 환경청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자연환경과)

(자연환경과)

-	50	_
---	----	---

(앞쪽)

허가번호 제 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

상 호(성 명)	연락처	
주 소		

허 가 사 항

대상종 학명	부속서	수량	목적・용도	허가기간	허가조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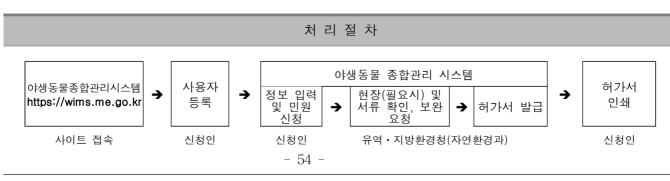
유의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일시 대상종 학명 부속서 개체수 인공증식시설 소재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상호(성명)							
신청인	 연락처							
	소재지							
		[] 물과 음	식 제공 []	적당한 환경 제공	[] 동물	건강관리	
	일반사육관리 기준충족여부	[] 행동 관 [] 행정		교육, 설명과 관람 충분한 자질을 갖着				
사 육			L .	· 중군인 자결할 것:		.] 건건	힌니	
시 설	사육개시일							
	.101							
	사육조건							
	관리방법							
	Liter							
사육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및 시설내역								
학 명 수량 부속서 시설규모(동) 시설면적(m²)							적(m²)	
			_	드의2제1항 및 같은	은 법 시행	규칙 제	23조의5	제1항어
따라 국제	적 멸종위기종 시	나육시설의 등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0	_
유역	환경청장(지방	환경청장)	귀하					
	1							
	1. 사육시설의 사건			육시설 현황내역서 15	<u> </u>			
신청인 제출서류				행규칙」 별표 5의2 7		일반 시	육기준의	수수료 10만원
ие:ЧП		을 포함한 사원 네/ㅂㅎ시성에서) 1 H			.000
	4. 포오시얼 명세/	기(포오시얼에^	, 小型,至刊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i>)</i> 'T			



지정번호 제 호							
국제적	멸종위기	종 사육시	설 등록증	5			
상호(성명)							
연락처							
사육시설 소 재 지							
사육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및 시설내역							
학 명	수량	부속서	시설규모(동)	시설면적(m²)			
등록조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 (지방환경	<u> </u>	<u>·l</u>				